물 질 안 전 보 건 자 료 (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CEMEDINE C**
- MSDS 정리번호: GKR0563-1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접착제
- 사용상의 제한: 권고 용도 외 용도로서의 사용을 제한함.

다. 공급자 정보:
○ 제조자 정보:
- 회사명: CEMEDINE CO., LTD.
- 주소: Gate City Ohsaki East Tower, 1-11-2, Osaki, Shinagawa-ku, Tokyo 141-8620, Japan
- 전화: +81-3-6421-7413 팩스: +81-3-6421-7416
- 담당부서: 품질보증부
-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 전화: +81-3-6421-7413 팩스:

○ 수입자 정보:
- 회사명: DUKSHIN SILICONE CO., LTD
-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64 길 7-24 덕성 빌딩 2 층
- 전화: 02) 563-6381~4
- 긴급전화번호: 02) 563-6381~4

○ 긴급전화번호: 02) 563-6381~4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인화성 액체 구분 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 1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 3 (현기증 또는 졸음)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위험
○ 유해·위험 문구:
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 예방조치 문구:
<u>예방</u>

P210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 금연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P241 폭발 방지용 전기·환기·조명·장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대응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샤워하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시오.

저장

P403+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인화성이 강한 액체임.
- 증기와 공기의 혼합물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음.

○ 급성 및 지연성의 중요 증상 및 영향:

- 일반적 조언: 의료진에게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여주시오.
  불편함이 느껴지면 의사에게 연락하시오.
  노출된 경우, 의사에게 연락하시오.
- 먹었을 때: 졸음 또는 현기증의 우려가 있음.
- 피부에 접촉했을 때: 가벼운 정도의 피부 자극성
- 눈에 들어갔을 때: 심한 눈 손상
- 흡입했을 때: 졸음 또는 현기증의 우려가 있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혼합물: 니트로셀룰로오스 수지, 용액타입 접착제

화학물질명	이명	CAS No.	함유량(%)
Acetone	2-Propanone	67-64-1	40~50%
Nitrocellulose	-	영업비밀	10~20%
Ethanol	Ethyl alcohol	64-17-5	1~10%
2-Propanol	Isopropanol	67-63-0	1~10%
Butyl acetate	n-Butyl acetate	123-86-4	1~10%
n-Butyl alcohol	1-Butanol	71-36-3	1~10%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물로 수 분간 깨끗이 세정하시오.
-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경우, 간단히 제거 가능하다면 제거하고 계속해서 세정하시오.
- 눈 자극이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단/처치를 받으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의복을 즉시 벗으시오.
- 피부를 흐르는 물/샤워 장치로 세정하시오.
- 즉시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 공기가 신선한 장소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 호흡 관련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연락하시오.

라. 먹었을 때:
- 입 안을 헹구시오.
-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 의사에게 연락하시오.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눈과 피부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을 착용하시오.
- 증기 흡입을 피하기 위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피해자는 안정을 취하게 하시오.
- 의학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함.
- 특별한 처치는 필요하지 않음.
-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전문의의 처치를 받으시오.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포소화약제
- 부적절한 소화제: 없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자료 없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 조치:
- 전신 보호복 및 얼굴 전면을 덮는 양압 자급식 호흡기를 착용하시오.
- 관계자 외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시오.
- 방화복, 방염복, 내화복을 착용하시오.
- 이동 가능한 용기를 즉시 안전한 장소로 옮기시오.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즉시 누출장소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시오.
- 누출장소에는 보호구를 착용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하지 마시오.
- 충분히 환기하시오.
- 안전하게 대처 가능하다면 누출 및 유출을 막으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누출 장소에서는 금연하고, 화염, 불꽃・스파크는 인접구역에서 제거하시오.
- 보호구에 대한 세부 사항은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항을 참조하시오.
- 양압 자급식 호흡구를 착용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토양 및 수계에 방출하지 마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방법:
- 안전하게 대처 가능한 경우, 누출을 멈추시오.
- 안전한 폐기를 위해 적절한 밀폐 용기에 넣으시오.
- 충분히 환기하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누출장소에서는 금연하고, 화염, 불꽃・스파크는 인접구역에서 제거하시오.
- 안전한 폐기를 위해 누출물을 회수하여 적절한 용기에 넣으시오.
- 개인용 보호구는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항을 참조하시오.
- 정화 작업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 처리는 「13. 폐기 시 주의사항」항을 참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사용 전에 취급 설명서를 입수하시오.
- 모든 안전 주의사항을 읽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취급하지 마시오.
- 작업장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 취급 후에는 충분히 손을 씻으시오.
- 보호장갑, 보호복, 보호안경, 보호면을 착용하시오.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시오.
- 즉시 오염된 의복을 벗으시오.
- 오염된 의복을 재사용할 경우, 세탁한 다음 사용하시오.
- 분진, 흄,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 열, 스파크, 개방 불꽃, 고온물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취급하시오.
- 취급 장소에서는 금연하시오.

- 용기를 접지하시오.
- 정전기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시오.
-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시오.
- 환경에 방출하지 마시오.
- 배수구, 하수구 또는 수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 열, 스파크, 개방 불꽃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서 취급하시오.

나. 안전한 저장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환기가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하시오.
-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보관하시오.
- 용기를 밀폐하여 보관하시오.
- 용기를 접지하시오.
- 정전기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시오.
- 보관온도(최저/최고): 5~35°C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화학물질명	TWA	STEL	비고
Acetone (CAS No. 67-64-1)	500 ppm, 1188 mg/m^3	750 ppm, 1782 mg/m^3	
Ethanol (CAS No. 64-17-5)	1000 ppm, 1900 mg/m^3	-	발암성 1A(알코올 음주에 한정함)
Isopropyl alcohol (CAS No. 67-63-0)	200 ppm, 480 mg/m^3,	400 ppm, 980 mg/m^3	-
n-Butyl acetate (CAS No. 123-86-4)	150 ppm, 710 mg/m^3	200 ppm, 950 mg/m^3	-
n-Butyl alcohol (1-Butanol) (CAS No. 71-36-3)	C 50 ppm, C 150 mg/m^3	-	-

※ 참고 기재

<미국>

허용농도(NIOSH)

화학물질명	TWA	STEL
Acetone (CAS No. 67-64-1)	250 ppm, 590 mg/m^3	-
Ethanol (CAS No. 64-17-5)	1000 ppm, 1900 mg/m^3	-
2-Propanol (CAS No. 67-63-0)	400 ppm, 980 mg/m^3	500 ppm$^{(1)}$, 1225 mg/m$^{3(1)}$
Butyl acetate (CAS No. 123-86-4)	150 ppm, 710 mg/m^3	200 ppm$^{(1)}$, 950 mg/m$^{3(1)}$
n-Butyl alcohol (CAS No. 71-36-3)	-	50 ppm$^{(2)}$, 150 mg/m$^{3(2)}$

(1) 15 minutes average value(15분 평균치)
(2) Ceiling limit value

허용농도(OSHA)

화학물질명	TWA	STEL
Acetone (CAS No. 67-64-1)	1000 ppm, 2400 mg/m^3	-
Ethanol (CAS No. 64-17-5)	1000 ppm, 1900 mg/m^3	-
2-Propanol (CAS No. 67-63-0)	400 ppm, 980 mg/m^3	-
Butyl acetate (CAS No. 123-86-4)	150 ppm	-
n-Butyl alcohol (CAS No. 71-36-3)	100 ppm, 300 mg/m^3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국소배기, 안전 샤워 시설, 눈 세정 시설을 설치하시오.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보호: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호흡구를 착용하시오.
공인된 호흡구를 착용하시오.
○ 눈 보호: 측면 부착 보호안경, 밀폐식 안전 고글을 착용하시오.
공인된 눈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손 보호: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공인된 장갑을 착용하시오.
○ 신체보호: 전신 보호복과 안전화를 권고함.
※ 위생대책: 사용 중에는 음식을 먹지 마시오.
흡연하지 마시오.
오염된 의복을 벗고, 재사용 시에는 세탁하여 사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담황색 투명 액체
나. 냄새: 용제 냄새
다. 냄새 역치: 자료 없음.
라. pH: 해당 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자료 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Acetone) 56°C
사. 인화점: (Acetone) -18°C
아. 증발 속도: 자료 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해당 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상한) 19 vol% (Ethanol)
(하한) 2 vol% (Isopropyl alcohol)
카. 증기압: (Acetone) 24000Pa
타. 용해도: 자료 없음.

파. 증기밀도: 자료 없음.
하. 비중: 0.9g/cm^3 (밀도)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자료 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Butyl acetate) 420°C
더. 분해 온도: 자료 없음.
러. 점도: 자료 없음.
머. 분자량: 자료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반응성: 인화성이 높은 액체 및 증기임.
- 화학적 안정성: 통상의 보관 및 취급 조건 하에서는 안정적임.
- 유해 반응의 가능성: 자료 없음.

나.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열, 화염 및 스파크를 피하고 정전기를 방전하시오.

다. 피해야 할 물질: 자료 없음.
라.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자료 없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 본 제품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제품 내 각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노출 가능 경로 관련 정보
- 흡입
  · 급성: 졸음 또는 현기증의 우려가 있음.
  · 만성(지연성): 자료 없음.
- 경피
  · 급성: 가벼운 정도의 피부 자극성
  · 만성(지연성): 가벼운 정도의 피부 자극성
- 눈
  · 급성: 심한 정도의 눈 손상
  · 만성(지연성): 심한 정도의 눈 손상
- 경구 섭취
  · 급성: 졸음 또는 현기증의 우려가 있음.
  · 만성(지연성): 자료 없음.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Acetone
- 급성 경구 독성: 구분 외
  · LD_{50}(랫트, 강제투여) 5800mg/kg bw
- 급성 경피 독성: 구분 외
  · LD_{50}(토끼, 폐쇄계) > 7426mg/kg bw

- 급성 흡입 독성(증기): 구분 외
  - LC_{50}(랫트) 50.1mg/L air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구분 외

♦ Acetone
- 토끼 피부에 대해 자극성 없음.

♦ n-Butyl alcohol
- 토끼 피부에 대해 자극성 있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구분 1

♦ Acetone
- 토끼 눈에 대해 약간의 자극성 있음.

♦ n-Butyl alcohol
- 토끼 눈에 대해 심한 정도의 장해 있음.

○ 호흡기 과민성: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 피부 과민성: 자료가 불충분하여 분류할 수 없음.

♦ Acetone
- 과민성 없음(기니어피그, Maximization시험법).

○ 발암성: 자료가 불충분하여 분류할 수 없음.

♦ Acetone
- NOEL(마우스, 경피) 79mg 투여
  아세톤 경피 투여 후 발암성 징후 없음.
- ACGIH-A4(1996): 사람에 대한 발암성 물질로는 분류되지 않는 물질

♦ Ethanol
- IARC-Gr. 1; 발암성 있음(분류: 알코올 음료).
- ACGIH-A3(2008): 사람과의 관련성은 알 수 없으나, 동물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 Isopropyl alcohol
- IARC-Gr. 3: 발암성을 분류할 수 없음.
- ACGIH-A4(2001): 사람에 대한 발암성 물질로는 분류되지 않는 물질

♦ Vinyl Acetate (polymer)
- IARC-Gr. 3: 발암성을 분류할 수 없음.
- EPA(2005): 발암성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음.

♦ n-Butyl alcohol
- EPA-Group D(1996): 사람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자료가 불충분하여 분류할 수 없음.

♦ Acetone
- 포유류 세포 돌연변이 시험 및 염색체 이상시험에 음성임.

○ 생식독성: 자료가 불충분하여 분류할 수 없음.

♦ Acetone
- NOEL(P) 10000mg/L(랫트, 경구, 음용수). 아세톤 노출(5000mg/L, 음용수/8주 또는 10000mg/L, 음용수 4주간)로 인한 수컷의 생식 능력에 대한 영향 없음.
- LOEC(어미동물에 대한 독성 및 태아독성) 11000ppm(랫트, 흡입, 에어졸). 아세톤으로 인한 선택적 발생독성이 관찰되지 않음. 어미동물에 대한 독성은 고농도 11000ppm에서 체중 감소 및 자궁 중량 감소로 현저하게 나타남. 해당 투여량에서 태아독성에 관련해서는 태아에 대한 유의한 체중감소가 관찰됨.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구분 3 (현기증 또는 졸음)

♦ Acetone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구분 3 (현기증 또는 졸음)으로 분류됨.

♦ Butyl acetate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구분 3 (현기증 또는 졸음)으로 분류됨.

♦ n-Butyl alcohol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구분 3 (호흡기 자극성, 현기증 또는 졸음)으로 분류됨.

♦ 2-Propanol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구분 3 (현기증 또는 졸음)으로 분류됨.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자료가 불충분하여 분류할 수 없음.

♦ Acetone
- LOAEL(마우스, 경구, 음용수) 50000ppm
  간장의 절대 중량 및 체중에 대한 간장 중량이 암컷 마우스에서 유의하게 증가함.
- NOAEC(랫트, 흡입, 증기) 19000ppm
  유해성 징후 없음.

○ 흡인유해성: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본 제품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제품 내 각 성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

가. 생태독성: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자료가 불충분하여 분류할 수 없음.

♦ Acetone
- 어류: LC_{50}(Pimephales promelas, 96hr) 8120 mg/L
- 갑각류: LC_{50}(Daphnia pulex, 48hr) 8800 mg/L
  NOEC(번식)(Daphnia magna, 28일) 2212 mg/L
  NOEC(폐사)(Daphnia magna, 28일) > 1106 mg/L
- 조류: NOEC(Microcystis aeruginosa, 8일, 생물량) 530 mg/L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자료가 없어 분류할 수 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Acetone
- 이분해성 물질(28일 후의 생분해도 90.9%)

다. 생물 농축성:

♦ Acetone
- BCF 3(EPIWIN v3.20, BCFWIN v2.17에 따른 계산)

라. 토양 이동성: 자료 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 없음.
- 오존층에 대한 유해성: 자료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폐기물은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를 준수하여 폐기하시오.

나. 폐기 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용기 및 포장은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를 준수하여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1133
나. 유엔 적정 선적명: 접착제(인화점이 -18°C 이상 23°C 미만인 것)
ADHESIVES, containing flammable liquid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Class 3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II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비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자료 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
  · 유해・위험물질: 인화성 액체(규정량: 제조・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물질(인화성 액체)
  · 관리대상 유해물질(Acetone, 2-Propanol, Butyl acetate, n-Butyl alcohol)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Acetone, 2-Propanol, Butyl acetate, n-Butyl alcohol)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Acetone, 2-Propanol, n-Butyl alcohol)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설정 물질(Acetone, Ethanol, 2-Propanol, Butyl acetate, n-Butyl alcohol)
- 각 성분:
  ✓ Acetone (CAS No. 67-64-1)
    · 유해·위험물질: 인화성 액체(규정량: 제조・취급- 5,000kg (저장: 200,000kg))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험물질(인화성 액체)
    · 관리대상 유해물질(함량기준: 용량비율 1% 이상 함유 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함량기준: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함량기준: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설정 물질
  ✓ Ethanol (CAS No. 64-17-5)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설정 물질
  ✓ 2-Propanol (CAS No. 67-63-0)
    · 관리대상 유해물질(함량기준: 용량비율 1% 이상 함유 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함량기준: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함량기준: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설정 물질
  ✓ Butyl acetate(CAS No. 123-86-4)
    · 관리대상 유해물질(함량기준: 용량비율 1% 이상 함유 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함량기준: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설정 물질
  ✓ n-Butyl alcohol (CAS No. 71-36-3)
    · 관리대상 유해물질(함량기준: 용량비율 1% 이상 함유 제제)
    ·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함량기준: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함량기준: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설정 물질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본 제품: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취급량 10톤/년 이상, 1.0wt% 이상의 경우)
- 각 성분:
  ✓ 2-Propanol (CAS No. 67-63-0)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취급량 10톤/년 이상, 1.0wt% 이상의 경우)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지정수량: 200L)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 및 액상의 폐합성수지는 지정폐기물임.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국내
  · 대기환경보전법: 휘발성유기화합물(Isopropyl Alcohol)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물질(유기용제류, 질소화합물)
  · 해양환경관리법: 유해액체물질 Y류(아세트산부틸(모든 이성질체))

16. 그 밖의 참고 사항

가. 자료의 출처: 제조사인 CEMEDINE CO., LTD.가 제공한 MSDS
- 평가 방법:
  본 혼합물은 입수 가능한 원재료의 시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에 근거, 관련된 농도한계치를 이용하여 분류함.
- 참고문헌
  1)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Rev. 6, 2015)
  2) ECHA Web site 공개 자료
  3) 유해물질에 관한 GESTIS Data base

나. 최초 작성일자: 2016년 07월 29일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초판

라. 기타
- 본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일본 CEMEDINE CO., LTD.에서 작성한 MSDS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9호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것임.
  · 일문 원본 작성일: 2016년 4월 27일

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은 현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 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목적은 안정성의 관점에서 제품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제품의 성상에 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음.